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40호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장

1. 공 고 명: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2017. 11. 09. ~ 2017. 11. 23.(15일)
3. 양수이유: 태양광발전소 매각에 따른 양도·양수
4. 양수인가 내용

구 분	양도인	양수인
허가번호	서울-336호(2017-02)	좌동
허가일자	2017. 02. 21.	좌동
발전소명	호성 태양광발전소	좌동
대표자	전영준	백순이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58 (건축물 옥상)	좌동
설비용량	15.75kW	좌동
양수인가일	2017. 10. 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4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장

조 합 현 황			취소이유	취소근거	취소일
인가번호	조합명 (이사장)	소재지(정관)			
2014-11	해인 의료생활협동조합 (황인철)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24, 상원빌딩4층	1년 이상 사업 미운영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4호	2017.10.30.
2015-1	나우누리 의료생활협동조합 (노태구)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98, 1~3층 (신림동, 경성빌딩)			

※ 문의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전화 2133-536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4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를 위한 공시 송달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하고자 동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2. 대상자

조합명	대표자	주사무소(정관)
국민복지의료생활협동조합	전완식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52, 2층(독산동, 삼미뉴타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 미운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조합 설립인가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